

의안번호	2211501
의 퇴 인	송언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G38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에 석유대체연료 개발기술 포함 및
항공연료로 공급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에 석유대체연료 개발기술 포함 － 석유대체연료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11호): 바이오연료, 재생합성연료, 그 외 석유대체연료 등	
2	안 제106조 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○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－ 항공운송사업자(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): 국내 항공운송사업자,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6조 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·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기술을 포함하고,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,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

예상됨(안 제10조제1항, 안 제106조 등)

- 안 제10조제1항은 신성장·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기술을 포함함에 따라 기업의 해당 기술 관련 R&D 비용 및 사업화시설 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증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－ 신성장·원천기술*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
 - ※ 신성장·원천기술이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의미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¹⁾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	
				반도체 외	반도체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~40	40~50	
	중견기업 ²⁾	8~20	20~35	30~45	
	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	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	30
	중견기업 ²⁾	5~7.5	6~9	15~20	20~25
	대기업	1	3	15	20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- － 개정안은 현행 일반기술로 구분되는 석유대체연료 개발기술을 신성장·원천기술에 포함함에 따라 기업의 해당 기술 개발비용 및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안 제106조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－ 현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(수출·국제선사용 연료 등)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연료가 개정안의 대상에 포함됨
- 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석유대체연료 개발기술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R&D 및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-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될 석유대체연료 개발기술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
- 또한, 석유대체연료 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참고로, 석유대체연료가 속한 환경기술의 연구개발비는 2019년 7.8조원에서 2023년 13.2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, 석유대체연료를 구분한 R&D 비용이나 투자액 등의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재

[표 2] 환경기술의 연구개발비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연구개발비	77,641	88,952	101,260	112,180	132,373

자료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, 「20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」, 2024.12.

- 안 제106조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항공연료 공급량 및 공급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현재까지는 해당 연료가 생산되지 않고 있어 향후 공급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므로, 세수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 - 참고로, 「석유사업법」 상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항공유(SAF)¹⁾는 2027년 하반기부터 생산 물량이 발생할 예정²⁾

III. 부대의견

- 없음

1) SAF(Sustainable Aviation Fuel)는 HEFA(Hydrotreated Esters and Fatty Acids) 공정으로 생산되는 연료를 가리킴

2)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